

가루약 가산(2023.11.1.시행) 관련 FAQ
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-259호 관련, 2019.1.1.적용)
 (보험급여과-3476호(2019.7.1.) 관련, 2019.7.1.적용)
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8호 관련, 2023.11.1.적용)

연번	질의	답변
1	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	<p>○ 소아 및 성인까지 삼킴곤란 등 환자에게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(정제, 캡슐제, 과립제) 의약품을 가루형태(분쇄)로 조제하는 경우 산정합니다.</p> <p>- 다만,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른 분할·분쇄 불가 의약품 및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</p>
2	가루약 조제 처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	<p>○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‘조제 시 참고사항’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하여 처방하므로, ‘조제 시 참고사항’란을 확인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</p>
3	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조제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	<p>○ 처방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가루약으로 처방하는 경우</p> <p>- 조제료는 처방의약품중 가장 긴 조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</p> <p>- 가루약 가산은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의약품의 조제일수에 해당되는 가루약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사례) A의약품 10일분, B의약품 5일분이 처방되고 B의약품을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</p> <p>- 조제료는 10일, 가루약 가산은 5일 조제료의 30%를 산정</p>
4	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루약 조제가 기재되어 있으나 환자가 가루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	<p>○ 약사는 조제 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확인 후 조제하며, 조제기록부에 조제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.</p>

연번	질의	답변
5	6세미만 소아 가산(650원)과 제형변경(가루약) 조제 가산을 동시에 중복산정할 수 있나요?	○ 아닙니다. 가루약 가산과 소아 가산은 동시에 중복산정할 수 없습니다.